www.i-sh.co.kr

청렴 청신호, 부패 적신호

2021년 하반기 기존주택매입임대

입주대기자 모집공고

2021. 08. 25.



SH 서울주택도시공사

2021년 하반기 서울주택도시공사

기존주택매입임대 입주대기자 모집공고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서울시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기존주택매입임대(다가구, 원룸) 입주대상자를 모집합니다.

1 공급대상 및 모집인원

▶ 주택유형별 규모 및 신청가능한 가구원수(신청 이후 주택형 변경은 불가)

주택유형	전용면적	모집인원	가구원수[1)]
다가구 가형	50㎡ 이하	1,317	모든 가구
다가구 나형	50㎡ 초과 85㎡ 이하	598	3인 이상 가구
원룸주택	50㎡ 미만	940	1인~2인 가구

※ 단, 입주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가구원수보다 적은 규모의 주택(원룸)도 신청가능.

1) 가구원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8.25.)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 자치구별 모집인원

자치구	계	**다가구 가형**(모든가구)	**다가구 나형**(3인이상 가구)	**원룸**(2인이하)
강남구	60	0	0	60
강동구	400	240	100	60
강북구	16	16	0	0
관악구	60	30	0	30
광진구	98	20	18	60
구로구	410	170	240	0
금천구	200	100	80	20
동대문구	55	25	30	0
동작구	72	12	0	60
마포구	65	25	30	10
서대문구	28	0	18	10

자치구	계	다가구 가형(모든가구)	다가구 나형(3인이상 가구)	원룸(2인이하)
서초구	500	300	0	200
성동구	14	14	0	0
성북구	10	0	0	10
송파구	614	300	14	300
양천구	80	0	30	50
영등포구	99	45	14	40
은평구	64	20	24	20
중랑구	10	0	0	10
총 계	**2,855**	**1,317**	**598**	**940**

※ 입주대기자 모집 제외 자치구(6) : 강서구, 노원구, 도봉구, 용산구, 중구, 종로구
- 자치구내 임대주택재고물량 및 매입계획을 고려하여 모집인원 선발 제외

■ 유의사항

- **(필수확인 : 공급방식 특성)** 모집인원은 **대상 자치구의 신규 매입임대주택(다가구,원룸) 예상세대와 보수중인 세대, 향후 입주자 퇴거로 인해 발생할 공가 등을 대비하여 입주대기자를 모집하는 것이므로 입주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입주대기중인 신청자 모두에게 기회가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점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이번 공고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방식)** 입주대기자에게 신규 매입임대주택(다가구, 원룸) 및 입주자 퇴거 등으로 인한 공가에 대해 입주대기자 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입주대기자명부의 유효기간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6개월까지(2022.06.24.)까지입니다.
- 기존주택매입임대(다가구, 원룸)는 우리공사에서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주택으로, 대부분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계단을 통하여 출입하여야 하므로 휠체어 등 사용시 통행에 불편이 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자격 및 순위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 공고일(2021.08.25.)현재 **사업대상지역(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1, 2순위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공급신청자**

※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연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특히, 공고일 이후 신청자치구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공급 불가합니다.

※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1세대에서 중복신청이 발견될 경우, 모두 탈락처리)

※ 성년자 : 민법상 성년자(만19세 이상, 2002.08.25.이전 출생)와 아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말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합니다.(임대차계약 체결 시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함)
- 미성년자가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주일 경우(동일 세대 주민등록표에 등재)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외국인인 부 또는 모가 미성년자녀와 동일세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야 함.)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 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세대구성원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외국인 배우자(외국인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외국인 직계존 · 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세대구성원의 태아

※ 주택소유여부, 소득 자산산정,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해당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 외국인은 신청불가합니다.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주택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순위별 자격요건("자격 해당여부, 배점적용은 공급신청자 본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순위		세부 자격요건
1순위	생계·의료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국민생활기초보장법」 제2조 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자(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동일순위시 경합 배점표 5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하거나 소득대비 임차료(*임차료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한다)의 비율이 30% 이상인자
	저소득 고령자	「국민생활기초보장법」 제2조 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자(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계층) 중 만65세(1956.08.25.이전 출생) 이상인 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 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이면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이하 자산")기준 충족하는 자
2순위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이하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이고 자산기준 충족하는 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 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100%이하이고 자산기준 충족하는 자

■ 소득 · 자산 세부기준

구 분	입주자격요건

소득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	2,094,142원	2,737,521원	3,120,260원	3,547,103원	3,547,103원	3,696,824원
월평균소득 70% 이하	2,692,468원	3,650,028원	4,368,364원	4,965,944원	4,965,944원	5,175,553원
월평균소득 100% 이하	3,589,957원	5,018,789원	6,240,520원	7,094,205원	7,094,205원	7,393,647원

※ 1인가구는 기준 소득률에 20% 가산, 2인가구는 기준소득률에 10% 가산된 금액임.
※ 6인 이상 가구는 6인 가구 소득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 1인당 평균금액(192,188원) 합산하여 산정
(월평균소득의 70%이하) 1인당 평균금액(269,093원) 합산하여 산정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1인당 평균금액(384,376원) 합산하여 산정

구 분		입주자격요건
자산	총 자산 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15억원 이하** (부동산가액 + 자동차가액 + 금융자산가액 + 기타자산가액 - 부채)
	자동차 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 * **자동차**는 총 자산으로 평가와 별도로 **추가 관리됨**

- 소득 자산 산정 및 자산 확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및 세대원을 대상으로 함.
- 입주자격, 소득금액의 산정시점, 자산가액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자격, 소득금액, 자산가액은 입주자모집공고일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

■ 소득 · 자산 산정방법

- 소득·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 입니다. [**소득 및 자산액은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의 합계액을 말함**]

구분		산정방법
소 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총 자 산	부동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농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초지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구분		산정방법
총자산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장애인 복지법」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금융자산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 연금저축 :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기타자산	• 「지방세법」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지방세법」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지방세법」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지방세법」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 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구분	산정방법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자동차 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장애인 복지법」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 의 시행(2016.12.30)에 따라 입주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의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금융정보 제공 사실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서명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 생략하여 해당 비용을 발생하지 않음.



3 동일순위 경합시 선정기준

■ 동일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때에는 아래의 **배점항목표**에 의한 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일 점수인 경우 배점항목표 **제5항과 제6항의 가점 합계점수가 높은 순**에 의해 선정 [단, 제5항과 제6항의 가점 합계점수가 동일할 경우 **사업대상지역(자치구)의 최종전입일이 빠른 순서대로 입주자 선정**]

* 사업대상지역(자치구)의 최종 전입일 : 주민등록초본상 확인이 가능한 전입일자만 인정, 말소의 경우 재등록일을 기준으로 산정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① 입주자선정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한 총기간 또는 *취업,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총기간** (세대원 참여기간 포함)	가. 24개월 이상	3점
	나.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점
	다. 12개월 미만	1점
② 입주자선정기준일 현재까지 당해 시(특별시·광역시 포함)·군 지역에서의 연속 거주기간 ☞ 서울특별시 연속 거주기간을 의미. ☞ 신청자 기준으로 연속 거주기간 산정	가. 5년 이상	3점
	나. 3년 이상 5년 미만	2점
	다. 3년 미만	1점
③ 부양가족(제9조제7항의 세대원을 말함)의 수	가. 3인 이상	3점
	나. 2인	2점
	다. 1인	1점
	※ 별도가점 1) 민법상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1명 : 1점, 2명 : 2점, 3명 이상 : 3점) 2)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부양(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를 말하며, 배우자 직계존속을 포함) : 1점 3) 세대주를 포함한 가구 구성원 중 중증 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의 경우에 한함)이 있는 경우 : 1점	별도 가점
④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 (인정회차 기준)	가. 24회 이상 납입	3점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	2점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	1점
⑤ 현 거주지의 최저거주기준 미달여부(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규정된 보장시설 거주자는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모두 구비한 것으로 봄) ※ 입주자 선정 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최근 1년간의 거주기간 합산 가능)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곳에 거주한 경우에 인정함.	가.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을 모두 구비하지 못한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4점
	나.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중 어느 하나를 구비하지 못한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2점
⑥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임차료는 주거급여액 차감후 금액을 의미, 부양의무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료는 인정하지 않음 ※ 임차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 임차료가 0인 경우 임차료 부담이 없으므로 가점 대상 제외	가. 80% 이상	5점
	나. 65% 이상 80% 미만	4점
	다. 50% 이상 65% 미만	3점
	라. 30% 이상 50% 미만	2점

[항목 추가설명]

1) 취업 :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취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은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확인

2) 창업 :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사업을 영위하고 「소득세법」에 따라 매년 사업소득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하며, 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은 세무서를 통해 확인

3) 부양가족의 범위

**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① 신청자를 제외한 무주택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전원(세대구성원의 태아 포함)

② 신청자의 형제 · 자매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단,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미만, 2002.08.26.이후 출생) 또는 만60세(1961.08.25. 이전 출생) 이상인 자에 한함

4) 최저주거기준미달 기준

-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을 모두 구비하지 못한 주택
-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중 어느 하나 구비하지 못한 주택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규정된 보장시설은 제외 : 장애인 거주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및 통합시설,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노숙인 재활시설 및 노숙인 요양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

4 임대조건

<table>
<tr><td>임대기간</td><td colspan="2">● <u>임대기간은 2년이며</u>, 계속 거주 희망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u>2년 단위로 9회(최장 20년거주)까지 계약 갱신 가능, 다만 재계약시 만65세 이상 고령자인 경우 재계약 횟수 제한 없음.</u>
● 재계약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입주 후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입주자격 소득요건을 초과하였으나 입주자가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비율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할증 후 재계약이 가능
● 재계약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하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80% 할증하여 적용(이후에는 퇴거해야 함.)
※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17조제3항, 4항 및 별표5 참고</td></tr>
<tr><td>임대조건</td><td colspan="2">- 시중 전세금액의 약 30% 수준(임대조건은 입주자선정 후 개별안내)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현황 : 아래 표는 참고용으로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지역에 따라 편차가 매우 클 수 있음.
<table>
<tr><th>구 분</th><th>다가구</th><th>원룸</th></tr>
<tr><td>전용면적</td><td>10.8㎡ ~ 85㎡이하</td><td>12.05㎡ ~ 49.99㎡</td></tr>
<tr><td>임대보증금(평균)</td><td>20,575,000원</td><td>17,381,000원</td></tr>
<tr><td>임대료(평균)</td><td>253,600원</td><td>168,300원</td></tr>
</table>
- 재계약시에는 관련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될 수 있음.</td></tr>
<tr><td rowspan="3">상호
전환제도</td><td>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
전환</td><td>● 전환비율 : 표시된 월 임대료의 최대 60%까지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 일부 전세형 매입임대주택은 월 임대료의 최대 80%까지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 전환이율 : 연 6.7%
예시) 임대료 10,000원 당 보증금 약 180만원 추가 납부</td></tr>
<tr><td>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td><td>● 전환비율 : 표시된 보증금의 최대 60%까지 월 임대료로 전환 가능
● 전환이율 : 연 2.5%
예시) 보증금 1,000,000원 당 월 임대료 약 2,000원 매월 추가납부</td></tr>
<tr><td colspan="2">● 유의사항
- 상호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 기본조건으로 계약체결 후 잔금에 대해서 신청 가능하며, 전환유형에 상관없이 연1회 신청 가능(전환신청 후 1년 이내 재신청 불가)
- 아직 입주 전인 세대가 입주지정종료일 이내에 신청한 경우, 입주 전까지 전환보증금을 납부하여야 전환된 금액으로 임대료를 일할 계산합니다.
- 입주지정종료일 이후에 입주하여 전환하거나, 입주지정종료일 이전에 입주하더라도 입주한 이후 전환할 경우에는 전환보증금은 납부일로부터 일할 계산되지 않고 익월 1일부터 적용되므로 이 경우 매월 25일부터 말일 사이에 전환보증금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td></tr>
</table>

5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절차

신청접수	입주대기자 선정	최종대상자 발표	주택선정	계약체결	잔금 납부 및 입주
동주민센터 방문접수	관할구청	서울주택 도시공사	서울주택 도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 입주대상자	관할센터 ↔ 입주대상자

■ 신청장소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동사무소)

■ 신청일정 : 1순위 모집인원 미달시에만 2순위를 모집함(신청상황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문의)

- 1순위 : 2021.09.06.(월) ~ 2021.09.08.(수)
- 2순위 : 2021.09.09.(목) ~ 2021.09.10.(금)

※ 주택유형(다가구 가형, 다가구 나형, 원룸)을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접수 후 주택유형 변경은 불가.

6 신청시 구비서류 :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이후 발급분 제출

■ 현장방문 신청자 구비(제출)서류

구비사항	비 고
본인 직접 신청시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배우자가 대리 신청시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시	①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② 본인(신청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③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기본 제출서류

구비사항		비 고	발급처
① 매입임대주택 공급신청서		• 접수 장소에 비치	신청자 작성
②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③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원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동 주민센터
④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초본		• 반드시 신청자의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공급신청자 포함)	동 주민센터
⑤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예 :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동 주민센터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만 추가 제출> • 반드시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 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동 주민센터
배점 항목표 입증서류 (해당자만 제출)	납입인정 회차증명서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한함, 6회 이하 납인한 자는 납입인정회차 증명서 발급이 되지 않음 ※ 발급기준일 : 2021.08.25. **(발급관리번호 : 2021980139)**	청약 가입은행 또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http://www.applyhome. co.kr)
	가구구성원의 자활프로그램 참여 증명 서류	•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한 기관이 발급한 증빙서류	
	취업,**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총기간	• 취업 : ① 재직증명서 ② 4대 보험 사회보험가입자 가입내역서 * 4대 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공동인증서로 발급 가능 *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지사에서 현장 발급 가능	
배점 항목표 입증서류 (해당자만 제출)	취업,**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총기간	• 창업 :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서 ※ (창업 및 취업공통사항)다른 공고에서도 통상적으로 공인된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도 제출할 수 있으나, 입주자 선정권한이 자치구에 있으므로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에서 인정될 경우 가능.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 문의)	
	임신진단서	• 가구원수별 주택유형 및 소득기준 산정시 가구원수에서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병원
	가구구성원 중 중증장애인 있는 경우	**중증장애인 입증 서류**	동 주민센터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거주자	[전용 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 - 현재 거주지 주소가 확인될 수 있는 사진, 부엌 및 화장실 사진 각 1부	신청자 작성
	소득 대비 임차료의 비율이 30%이상인 자	주택임대차 계약서 1부(확정일자가 날인된 계약서만 인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대차 계약서도 접수가능	
	<동일주소 외국인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 세대원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 외국인 배우자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시 제출 생략** **- 가구원수별 주택유형 및 소득기준 산정시 외국인 배우자 포함할 경우에만 제출**	출입국 관리사무소

■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주거지원 시급가구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저소득 고령자 추가자격 입증서류

대상자	제출서류	발급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생계·의료 수급자 증명서	동 주민센터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동 주민센터
저소득 고령자	**- 주거, 교육 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 차상위 계층 :**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확인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동 주민센터 등

대상자	제출서류	발급처
주거지원 시급가구	**- 주거, 교육 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 차상위 계층 :**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확인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동 주민센터 등
	소득 대비 임차료의 비율이 30%이상인 자 - 주택임대차 계약서 1부(확정일자가 날인된 계약서만 인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대차 계약서도 접수가능	신청자 작성
	전용 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 - 현재 거주지 주소가 확인될 수 있는 사진, 부엌 및 화장실 사진 각 1부	

■ 추가서류 : 소득 50%이하자, 장애인가구(소득70% 및 100%이하자)

대상자	구비사항	비 고	발급처
공통	금융정보등제공 동의서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 - 만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주의) 동의서를 미제출시 신청·접수가 거부됨	신청자 작성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동의서 다운로드)
	자산보유사실 확인서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능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수급자, 한부모가족 제외)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대차 계약서도 접수가능)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출자금 / 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해지 처리할 수 있음	
장애인	장애인 증명서		주민센터



7 입주대기자 선정결과 발표

예정일	**2021. 12. 24. (금) 18:00** ※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대기자는 각 자치구별 통보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입니다.
확인방법	**① 공사 홈페이지 우측 메뉴 "인터넷청약시스템" → 대상자 조회·제출 → 기타조회 → 매입임대 입주대기자 조회** **② 공사 콜센터 ARS 당첨자 조회 : ☎1600-3456 → 5 누르고 3(입주대기순번 조회)** **③ 공사 홈페이지 게시판**

8 기타사항

개별안내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시까지 입주자격(해당 자치구 거주, 소득, 자산 및 세대구성 등)을 유지하여야 하며, 변경시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입주대기자로 선정되더라도 즉시 계약 및 입주가 되지 않으며, **입주가능한 주택이 확보된 후 구청에서 선정된 입주대기자 순번에 따라 개별 안내합니다.** • **입주대기자로 선정된 자에 대한 임대주택에 대한 상세현황(소재지, 규모, 임대보증금, 임대료, 임대료 전환 가능 비율)은 주택선정 및 계약에 대한 안내시 등기우편으로 통보해 드리오니 입주대기자로 선정된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때에는 반드시 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을 서울주택도시공사 맞춤주택부에 우편(우편번호 : 06336, 주소 : 강남구 개포로 621)으로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대기자로 선정된 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서울주택도시공사 맞춤주택부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주택선정 및 계약에 대한 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입주대기자 순번 기회를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택선정	• 주택선정은 공사의 안내에 따라 주택확인 후 정해진 일시에 참석한 자를 대상으로 구청에서 선정된 입주대기자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 **공급대상 주택에는 월임대료의 60%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주택과 월임대료의 80%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주택이 있으므로 주택선정시 제공되는 임대주택 상세현황을 숙지하시어 향후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선정 후 미계약자는 추후 공급시 기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대기자 또는 입주대기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에 거주하던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당첨이 취소됩니다. 단, 계약자(그의 배우자 포함)가 아닌 세대원이 다른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 후 세대를 분리하면 계약 및 입주 가능 합니다. • 입주대기자가 제출한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거나 주민등록 법령을 위반한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주택선정)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입주자격	• 입주자격(해당 자치구 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 수급자, 한부모자격 등)은 **모집공고 일부터 입주시까지 유지하여야만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 신청자는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하고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결과 유주택자는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무주택임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급대상에서 제외되고 당첨취소 · 계약해제 및 해지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릅니다. • 입주자(세대구성원 포함)가 계약체결 및 입주 이후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을 경우 임대차 계약은 해지되고 퇴거하여야 합니다. • 입주대기자(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포함)는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 입주 후에도 무주택요건, 총자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가구당 월평균소득 등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계약 해지되고 주택을 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양도 전대 금지	• 이 주택은 양도, 전대할 수 없으며,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자 및 알선한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주택특성	• 기존주택매입임대(다가구, 원룸)는 우리공사에서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주택으로, 대부분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계단을 통하여 출입하여야 하므로 휠체어 등 사용시 통행에 불편이 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원룸주택 유의사항) 원룸주택은 면적이 협소하여 세대내 김치냉장고, 냉장고등 대형가전제품 설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매입임대주택 중 승강기(전기, 소방 등 포함)가 설치된 주택은 관할센터에서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할 경우 이에 동의해야하며, 위탁관리에 따른 관리비 등을 입주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일부 매입임대주택은 자동차 이용문화 변화 및 주차난 해소로 입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주차장 일부(1면~2면)를 나눔카(카셰어링) 사업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 기금 대출 관련	• 입주세대가 종전에 거주하는 주택에서 주택도시기금(구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반드시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주택도시기금을 기 대출을 받았으나, 해당은행이 공사 매입임대주택으로 대출 목적물 변경 승인시 상환이 필요 없으며, 관련 세부사항은 해당은행과 사전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전세자금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대출받으실 수 있으며,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국토교통부 훈령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합니다

9 문의처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구청, 동 주민센터
계약 및 입주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1600-3456)

유선(전화) 확인은 착오가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관련 상담내용은 참고로만 활용하시고, 반드시 공고문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021. 08. 25.

SH 서울주택도시공사

10.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자산항목 설명 및 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건강보험 보수월액 -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 (소득신고) - 장애인고용공단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사업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 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수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간호수당,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의료지원금은 제외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총자산	일반자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지방세정 자료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기타자산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항공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금융자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 금융정보 조회결과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임대보증금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 소득은 청약신청 전에 소득자료 출처 기관 등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입주신청자의 가구원 전원(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제외) 해당 세대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서명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사실 미통보' 서명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를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서명하여 제출하셔야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

11.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증여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S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20㎡ 이하 주택에 대한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 단,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12. 작성양식 : 별지서식

[별지1]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2호서식]

매입임대주택 입주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주택신청 유형	☐ 원룸주택 : 1-2인 가구용		☐ 다가구 가형 : 모든가구용		☐ 다가구 나형 : 3인이상		☐ 5인 이상 가구용		☐ 그룹홈용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그룹홈용은 그룹홈 미달 시에만 5인 이상 가구에 공급 가능합니다. 2. 신청 이후 주택형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 집전화 ( ) -			해당 자치구 전입일		년 월 일			
신청순위	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 가족 ☐ 주거지원 시급 가구 ☐ 장애인등록증 교부자(월평균소득 70%이하) ☐ 저소득 고령자		2순위	☐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월평균소득 이하)		3순위	☐ 월평균소득 70%이하인 자	우선	☐ 유공자
주택 및 자산현황	☐ 무주택	☐ 자산 및 자동차(「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이하)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2. 자산 및 자동차는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및 2순위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의 경우 작성합니다. 3. 자산 및 자동차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입주자격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매입임대주택 입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청장 귀하

본인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갱신계약 포함) 심사 및 입주 후 관리를 위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 및 재산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보 열람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 동일순위 경쟁시의 배점항목(아래는 해당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가	평점
①최근 3년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활사업프로그램 또는 취업·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을 합산한 총 기간(무주택세대구성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	가. 24개월 이상 나.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다. 12개월 미만	3점 2점 1점	( )월	( )점
②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까지 신청인의 해당 시(특별시·광역시 포함)·군 지역에서의 연속 거주기간 ☞ 서울특별시 연속 거주기간 의미	가. 5년 이상 나. 3년 이상 5년 미만 다. 3년 미만	3점 2점 1점	( )년	( )점
③부양가족의 수 (신청자 제외)	가. 3인 이상 나. 2인 다. 1인	3점 2점 1점	( )인	( )점
*별도가점	- 3자녀 이상(민법상 미성년자) 2자녀(민법상 미성년자) 1자녀(민법상 미성년자)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부양 (세대원에 한함,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중증장애인(신청인 포함)	3점 2점 1점 1점 1점	- 자녀수 ( ) - 부 양 ( ) - 장애인 ( )	( )점 ( )점 ( )점
④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회차 (인정회차 기준, 신청인명의의 통장만 인정)	가. 24회 이상 납입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	3점 2점 1점	( )회	( )점
⑤현 거주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보장시설거주자는 전용입식부엌·전용 수세식 화장실 모두 구비한 것으로 봄)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최근 1년간의 거주기간 합산 가능) 거주한 경우 인정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중 가. 모두 구비하지 못한 주택 나. 하나만 구비한 주택	4점 2점	- 전용입식부엌( ) - 전용수세식 화장실( )	( )점
⑥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임차료는 주거급여액 차감 후 금액을 의미하며, 부양의무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료는 배제	가. 80% 이상 나. 65% 이상 80%미만 다. 50% 이상 65%미만 라. 30% 이상 50%미만	5점 4점 3점 2점	( )%	( )점

위와 같이 관련사항을 확인합니다.

총점	점	소속		확인자	(인)

210mmx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공공주택 특별법」제5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권한 위임받은 시 · 도지사(시장, 군수, 구청장) 및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48조의6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신청자의 자격확인 또는 공공주택 거주자 실태조사를 위하여 개인정보 등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의7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 관리, 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청약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	본인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2. [필수] 본인(공급신청자를 말하며, 위 1.에 기재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서울주택도시공사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 자료 활용 등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구분	제공동의	개인정보 내역
기본	㉦	- 주민등록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 - 병역사항(행복주택 공급 시 남성에게만 해당) - 연락처(유·무선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가족관계사항 - 입주자저축 가입내역 - 주택소유 및 공공임대주택 계약·입주내역
소득	㉦	-「소득세법」 제12조,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소득내역 - 공적연금 가입내역 - 건강보험 가입내역 -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급여, 수당 및 직불금내역 - 국세 및 지방세 과세내역 - 사업자등록사항
자산	㉦	- 토지·주택·건축물 및 자동차 보유내역
기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여부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해당여부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5년, [계약자] 영구

마.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3. [필수] 본인은 위 2호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자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장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사회복지사업법 」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사회보장정보원),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거주자 실태조사업무 수탁자 및 만족도 조사업무 수탁자, 서울주택도시공사와의 협약 등을 통해 임대료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사·결제대행사 및 금융결제원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제공항목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국토교통부장관	주택소유여부 검색 주거급여 계좌정보조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사회보장정보원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내역
거주자 실태조사 업무 수탁자	거주자 실태조사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계약내역, 가족관계사항
입주자 만족도조사 업무 수탁자	입주자 만족도 조사	성명, 연락처, 주소
카드사·결제대행사	임대료 결제(카드) 임대료 수납관리	주소, 계약자번호
금융결제원	임대료 결제 (지로·자동이체)	성명, 생년월일, 계좌번호, 지로번호

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임대차계약 체결시까지, [계약자] 임대차계약기간

4. [필수] 본인은 위 2~3호의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5. [필수] 본인은 위 2~4호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동의를 거부할 경우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습니다.

6. [필수] 본인은 위 1~4호의 동의사항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7. [필수]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였습니다.**

구청장 귀하

[별지3]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세대 보유 자산에 대한 사실 확인 내용

구분		해당 여부	소재지 또는 내역	금액	명의인	신청자와의 관계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예 ☐ 아니오 ☐		원	[임차인]	
				원	[임차인]	
	분양권	예 ☐ 아니오 ☐		원	[수분양자]	
				원	[수분양자]	
	비상장주식	예 ☐ 아니오 ☐		원	[주주(보유자)]	
				원	[주주(보유자)]	
	출자금/ 출자지분	예 ☐ 아니오 ☐		원	[출자자]	
				원	[출자자]	
부채	임대보증금	예 ☐ 아니오 ☐		원	[임대인]	
				원	[임대인]	
	장기카드 대출 (카드론)	예 ☐ 아니오 ☐		원	[차주]	
				원	[차주]	

1. 상기 본인은 상기 사실 확인 내용에 대해 성실히 신고하였으며, 향후 확인조사 등을 통해 상기 신고 사실이 허위로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처벌(계약 해지 등)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 자산별 보유에 따른 추가 제출 서류
   가. 임차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공사 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
   나. 분양권 : 해당 주택 **분양계약서 사본** 및 제출일 현재까지 **분양대금 납부확인원(대출금액이 포함된 조사일 현재까지 총 납부한 금액)**
   다.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라.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마. 임대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바. 장기카드대출(카드론) : 신용카드사가 발급한 증빙서류

신청인 : (인)

년 월 일

구청장 귀하

※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4(벌칙)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주택법 제106조(과태료) :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별지4]

[앞면]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 공공임대주택 신청자 인적사항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신청자		-
주 소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세대원 등)

신청자와의 관계	동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1] (서명 또는 인)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2] (서명 또는 인)
		-		
		-		
		-		
		-		
		-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등이 신청자 본인, 배우자, 신청자의 세대주, 신청자와 세대주의 직계존속·비속의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데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 제출일부터 6개월

5. 정보제공 목적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지원

년 월 일

금융기관장·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금융기관 등의 명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정보 등의 범위

1. 금융정보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 :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잔액 또는 총납입금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합니다.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 액면가액
 마. 연금저축 :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 신용정보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나.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3. 보험정보
 가.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나.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유의사항

1.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해제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동의서는 최초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되며, 앞면에서 "유효기간"이란 동의서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정보등을 조회한다는 의미입니다. 향후, 재계약을 체결할 때 동의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사업주체는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나, 동의 대상자가 추가된 경우에는 추가된 동의 대상자에 대한 동의서면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동의자의 금융정보등은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재계약 시 자격확인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10㎜ x 297㎜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MEMO

MEMO

MEMO

SH 서울주택도시공사

06336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14-5)
www.i-sh.co.kr

콜센터 1600-3456